

# 임시 외국인 근로자 보호받는 귀하의 권리

캐나다에서는 **임시 외국인 근로자**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. 임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캐나다인 및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.

## 귀하의 권리

### 고용주의 의무:

- ▶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▶ 근무 첫날 또는 그 이전에 서명한 고용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합니다.
- ▶ 고용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. 계약의 일부로 초과 근무를 포함하는 경우, 초과 근무도 포함됩니다.
- ▶ 보복과 학대가 없는 직장이 되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.
- ▶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의 고용 및 채용 기준을 따릅니다.
- ▶ 주 또는 준주 건강 보험을 위한 자격이 될 때까지 귀하를 위해 응급 의료를 보장하는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(**의료 보험** 섹션에서 예외 사항 참고).
- ▶ 직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아프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.

### 고용주에게 금지하는 사항:

- ▶ 고용 계약서에서 승인하지 않은 불안정한 작업이나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.
- ▶ 귀하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.
- ▶ 고용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과 근무를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.
- ▶ 학대, 불안정한 작업, 부적절한 숙소를 신고하거나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.
- ▶ 여권이나 취업 허가증을 수거해 갈 수 없습니다.
- ▶ 캐나다에서 추방하거나 이민 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▶ 귀하를 고용하기 위해 지불한 채용 관련 수수료를 귀하가 변상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.



## ▶ 귀하의 고용 계약

근무 첫날 또는 그 이전에 고용주는 고용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. 캐나다에 있는 동안 선택한 공식 언어인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합니다. 귀하 및 귀하의 고용주 모두 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. 고용 계약에서는 고용 제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직업,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언급해야 합니다.

## ▶ 의료 서비스 이용

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용주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, 캐나다에서는 의사와 상담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# 주 또는 준주 의료 보험

귀하가 근무하는 주 또는 준주의 의료 보험 제도에 따라 무료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캐나다에 처음 도착하면 주 또는 준주 의료 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귀하의 주 또는 준주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료 보험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.

## 민간 의료 보험

귀하가 근무 중인 주 또는 준주의 의료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면, 고용주가 응급 의료에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귀하의 고용주는 이 민간 의료 보험에 대한 어떤 비용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.

귀하가 **멕시코** 또는 **카리브해**에서 계절 농업 종사자가 되는 경우, 해당 국가와 캐나다 간의 계약에 의료 보험 제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사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 ▶ 직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

상사나 고용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최대한 신속히 의료 조치를 취하십시오. 예를 들면, 고용주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(예: 의사, 간호사 또는 약사)에게 갈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

- ▶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.
- ▶ 응급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가 있도록 보장합니다.
- ▶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▶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는 교통편을 지원합니다.

고용주에게는 병원, 진료소,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는 교통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. (**의료 보험** 섹션에서 계절 농업 근로자에 대한 예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귀하는 고용주의 입회 없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권리가 있습니다.

## ▶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

고용주는 귀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. 고용주는 당신을 해고하거나 지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고용주는 직장에서 신고되는 모든 위험을 조사해야 합니다. 귀하에게는 **귀하와 고용주가 다음 사항에 동의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** 있습니다.

- ▶ 위험이 제거됩니다.
- ▶ 적절한 장비와 교육을 받습니다.
- ▶ 문제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.

## 고용주의 의무:

- ▶ 고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▶ 장비나 기계를 안전하게 작동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하도록 교육합니다.
- ▶ 직업에서 살충제/화학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합니다. 고용주는 귀하의 급여에서 이 장비 및 교육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. 귀하는 이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.

대다수 주와 준주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 보상 혜택(손실된 임금을 만회하기 위한 지급)을 제공합니다.

- ▶ 고용주가 근로자의 산재 보상 청구를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.
- ▶ 일부 주 및 준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장 안전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고용주는 귀하의 급여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.
- ▶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가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 또는 준주의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사무소에 상황을 신고하십시오(아래 연락처 참조).

## ▶ 학대가 없는 직장

고용주는 학대가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신체적, 성적, 심리적 또는 재정적으로 귀하를 학대할 수 없습니다.

학대에는 고용주의 법률 불이행을 신고하는 것에 대한 강등 조치 또는 위협, 징계 조치 또는 해고와 같은 보복이 포함됩니다. 귀하를 두렵게 하거나, 통제하거나, 고립시키는 모든 행동은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.

## 학대의 몇 가지 예:

- ▶ 신체적 상해,
- ▶ 위협, 모욕,
- ▶ 귀하의 건강에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강요,
- ▶ 원치 않는 성적 접촉,
- ▶ 갈 수 있는 곳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제한,
- ▶ 귀하에게서 절취,
- ▶ 귀하가 빚진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가는 행위,
- ▶ 여권, 취업 허가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압수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,
- ▶ 사기를 강요하는 행위,
- ▶ 근무 조건이나 학대에 대해 불평하거나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, 위협 또는 징계.

학대 상황을 신고하려면 서비스 캐나다 기밀 신고처 1-866-602-9448로 연락하십시오.

**즉시 도움이 필요하면 9-1-1 또는 지역 경찰에 전화하십시오.**

## ▶ 직장을 잃으면

고용주는 해고하기 전에 합당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 금액은 귀하의 근무 기간과 귀하가 일하고 있는 주 또는 준주를 기준으로 합니다.

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실직하거나 학대를 받아 이직한다면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고용 보험 정보를 알아보려면 **TI 일반 혜택**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.

## ▶ 고용주 변경

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취업 허가증은 현재의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,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**새로운 취업 허가**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귀하의 새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귀하를 고용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새 고용주는 **노동 시장 영향 평가**를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계절 농업 노동자인 경우 새로운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캐나다 고용주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의 **직업 은행**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채용 공고에는 고용주가 이미 긍정적인 노동 시장 영향 평가를 신청했거나 받았는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.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.

## 주거권

### ▶ 저임금 및 1차 농업 분야의 노동자

귀하가 저임금 또는 1차 농업 근로자인 경우, 고용주는 합당하고, 적절하며, 경제적인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. 고용주는 주거비와 수도 및 전기와 같은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프로그램 스트림에 따라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.

### ▶ 계절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의 노동자

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경우, 고용주는 적절한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(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숙박비를 공제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제외). 고용 계약서에는 모든 급여 공제를 기재해야 합니다. 허용하는 공제액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. 귀하가 **멕시코** 또는 **카리브해**에서 온 경우, 주택 및 유틸리티 비용은 서명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

### ▶ 적합한 하우징

귀하의 숙소는 다음을 포함한 주/준주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- ▶ 안전합니다(위험하지 않습니다).
- ▶ 혼잡하지 않습니다.
- ▶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기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.
- ▶ 작동하는 소화기 및 연기 감지기가 있어야 합니다.
- ▶ 환기가 적절히 되어야 합니다.
- ▶ 시설을 갖춘 화장실,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및 샤워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,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.
- ▶ 지속적으로 온수와 시원한 식수를 공급합니다.

귀하의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, 서비스 캐나다 기밀 신고처 1-866-602-9448로 전화하십시오.

## 도움을 받는 방법

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귀하 또는 귀하의 지인을 학대하는 경우, **귀하는 해당 사안을 신고해야 합니다.**

### ▶ 서비스 캐나다 신고처에 전화하기: 1-866-602-9448

- ▶ 이 서비스는 기밀입니다. 서비스 캐나다는 귀하의 신고 전화를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.
- ▶ 200개 이상의 언어 중 하나로 서비스 캐나다 상담원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.
- ▶ 우려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 익명으로 메시지를 남겨도 됩니다. 모든 통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서비스 캐나다에 학대를 신고하기 위해 [온라인 양식](#)을 사용해도 좋습니다.

### ▶ 학대 또는 학대의 위험으로 인한 직업 변경

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, **취약 근로자를 위한 개방형 취업 허가 신청**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. 개방형 취업 허가는 캐나다의 거의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권한을 부여하여 직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**학대의 피해자인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**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▶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의 도움 받기

#### ▶ 브리티시 컬럼비아:

- **Community Airport Newcomers Network**가 밴쿠버 국제 공항에서 귀하를 맞이하며, 정보 및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실시합니다. 1-604-270-0077.
- **MOSAIC**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, 가까운 지원 조직과 귀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1604-254-9626.
- **DIVERSEcity Community Resources Society**는 이주 근로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,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일합니다. (604) 547-1240

#### ▶ 앨버타, 서스캐처원 및 매니토바:

- 캘거리 가톨릭 이민 협회(**CCIS**)는 캘거리 국제 공항(YYC)에서 이주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가까운 지원 기관과 귀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1-888-331-1110

#### ▶ 온타리오:

- 다문화 이민자 및 지역 사회 서비스 (**Polycultural Immigrant and Community Services**)가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(YYZ)에서 귀하를 맞이합니다. 1-844-493-5839 교환 2266
- **TNO-The Neighbourhood Organization**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, 가까운 지원 기관과 귀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1-647-296-0161
- **Workforce Windsor Essex**는 커뮤니티 조정 전략을 통해 귀하를 지원합니다. 1-226-774-5829

#### ▶ 퀘벡:

- **Immigrant Québec**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. “Who can help(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)?” 탭에 지원 조직 목록이 있습니다.

▶ **뉴브런즈윅, 노바스코샤,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:**

- **이민자 서비스 기관 대서양 지역 협회(ARAISA)**에서 가까운 지원 단체와 귀하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.  
1-902-431-3203

▶ **뉴펀들랜드 레브라도:**

- **새 캐나다인 협회(ANC)**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며,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지원을 해드립니다. 1-833-316-5839 또는 1-833-31NLTFW

▶ **직장 건강 또는 안전 문제 신고**

위험한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?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습니까? 일 때문에 다치거나 아팠습니까? 그렇다면, **주 또는 준주의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.**

- ▶ **알버타:** 1-866-415-8690
- ▶ **브리티시 컬럼비아:** 1-888-621-7233
- ▶ **매니토바:** 1-855-957-7233
- ▶ **뉴브런즈윅:** 1-800-222-9775
- ▶ **뉴펀들랜드 및 레브라도:** 1-800-563-5471
- ▶ **노스웨스트 준주:** 1-800-661-0792
- ▶ **노바스코샤:** 1-800-952-2687
- ▶ **누나부트:** 1-877-404-4407
- ▶ **온타리오:** 1-877-202-0008
- ▶ **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:** 1-800-237-5049
- ▶ **퀘벡:** 1-844-838-0808
- ▶ **서스캐처원:** 1-800-567-7233
- ▶ **유콘:** 1-800-661-0443

▶ **기타 고용 문제 신고**

귀하가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,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나,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, **귀하의 주 또는 준주 고용 표준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:**

- ▶ **알버타:** 1-877-427-3731
- ▶ **브리티시 컬럼비아:** 1-833-236-3700
- ▶ **매니토바:** 1-800-821-4307
- ▶ **뉴브런즈윅:** 1-888-452-2687
- ▶ **뉴펀들랜드 및 레브라도:** 1-877-563-1063
- ▶ **노스웨스트 준주:** 1-888-700-5707
- ▶ **노바스코샤:** 1-888-315-0110
- ▶ **누나부트:** 1-877-806-8402
- ▶ **온타리오:** 1-800-531-5551
- ▶ **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:** 1-800-333-4362
- ▶ **퀘벡:** 1-800-265-1414
- ▶ **서스캐처원:** 1-800-667-1783
- ▶ **유콘:** 1-800-661-0408, 교환번호 5944

▶ **연방 규제를 받는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**

캐나다의 대다수 산업은 주정부 또는 준주 정부의 규제를 받지만, 일부는 연방 정부의 규제 하에 있습니다. 연방 규제를 받는 직장인 경우 **온라인** 또는 1-800-641-4049로 전화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**연방 규제 산업 및 작업장 목록**

##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

본인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생각되거나,  
인신매매 활동이 의심되거나, 알고 있는  
경우의 연락처:

- ▶ **캐나다 인신매매 핫라인** 1-833-900-1010  
으로 전화하여 지역 사회의 지원 서비스 또는  
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거나
- ▶ 서비스 캐나다의 비밀 신고 전화  
1-866-602-9448로 문의하십시오.